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소득공제자용) 업무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26.04.03

2.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코스닥벤처펀드 가입가능일자 및 소득공제기일 연장, 소득공제 금액 한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3조 ① <생략></p> <p>② 벤처펀드저축은 2025년 12월 31일(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p> <p>제 4 조 ① 저축자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 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신설></p>	<p>제1조~3조 ① <생략></p> <p>② 벤처펀드저축은 2028년 12월 31일(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p> <p>제 4 조 ① 저축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 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저축자 1명당 연 2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② 제 4 조 제 1 항의 소득공제한도 개정 내용은 2026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p>	<p>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 개정사항 반영</p> <p>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②) 개정사항 반영</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6127호, 2026.02.27> (제7조①, ②) 반영</p>

<p>제 4 조 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생략></p> <p>제4조 ②~제6조 ① <생략>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 ③~제7조 <생략></p> <p>제 8 조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8조 ②~제10조 <생략></p> <p>제 11 조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p>	<p>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 천만원 미만이고,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2 월 26 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의 개정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개정약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관에 따른다.</p> <p>제 4 조 ③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생략></p> <p>제4조 ②~제6조 ① <생략>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 ③~제7조 <생략></p> <p>제 8 조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8조 ②~제10조 <생략></p> <p>제 11 조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p>	<p>항 변경</p> <p>법령명 변경</p> <p>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 신설 내용 반영</p>
---	---	---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생략>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생략>

3.개정규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일 추가